

피해구제 촉진하는 동의의결제

법 위반자가 원상회복 등
시정 방안 제시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 안 따지고 사건 종결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미국 EU 등의 제도를 참조한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태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다.

당국은 동의의결제를 통해 사건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법 집행에 드는 행정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각 산업과 시장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법집행도 가능하다. 소비자도 시정방안이 신속히 실행되면 손해배상, 가격인하 등 피해 구제를 효율적으로 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위법 판단을 받지 않아 이미지 훼손을 피하게 되고, 신속한 사건 종결로 비용·시간·인력을 절약하게 된다. 나아가 법적 분쟁의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 상황을 잘 아는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시장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동의의결제의 적용을 받으면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대상 행위의 사실 관계 및 경쟁 질서의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시정 방안을 기록한 서면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기존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된다.

동의의결의 대상은 기업 결합,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다만 담합행위 및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의의결제가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쟁 질서 회복을 도모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동의의결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게 하고 담합 행위도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검찰총장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형사 범죄에 관한 전속적인 고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남용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고,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고자 공정위에서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토록 한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공정위의 전속적인 형사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공동으로 동의의결을 심사하도록 하는 게 동일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에 더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동의의결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 동의의결을 기피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동의의결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누구든지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는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을 취소당하거나 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해도 된다. 사업자의 취소 신청권을 명문화하고,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의의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스톡뉴스
사진

지난 11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FTA비준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